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5
------	------

2023. 12. 18.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조례 내 일본어 투 표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일본어 투 표현 “한하여” 정비

나.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다.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이관)에 따른 부서명 정비

라. 그 외 경미한 오기 정정

Ⅲ. 검토의견 요약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어 투 표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현행화, 조직개편으로 미반영된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제출됨.

나.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 하도록 법령을 한글화하는 한편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고치며,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 표현을 정리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바꿈으로써 입법 의도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일본식 용어인 ‘~에 한하여’ 등을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 등을 위해 서울시 조례 827건¹⁾ 중 107건을 대상으로 138개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서울시 조례와 규칙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에 따르면 조례 827건, 규칙 231건, 훈령 32건, 예규 13건이 등록되어 있음.(2023.12.8.기준)

- 세부 정비 내용으로는 일본어 투 표현 ‘한하여’ 등에 해당하는 용어 순화 112개와 제명·인용 조문 현행화 13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 12개, 그 외 경미한 오기 정정 1개임[참고자료 1].

< 조례안 정비 세부내용 >

구 분	유형별 정비내용 사례
일본식 용어 순화 (112건)	◦ 한하여 ⇒ 한정하여 ◦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 2회에 한하여 ⇒ 두 차례까지만 ◦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 방법에 한하여 ⇒ 방법으로만 ◦ 자(사람)에 한하여 ⇒ 자(사람)에게만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13건)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해영향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 (12건)	◦ 시민소통기획관 ⇒ 홍보기획관 ◦ 갈등관리 협치과 ⇒ 시민협력과 ◦ 시정연구담당관 ⇒ 창의행정담당관
그 외(1건)	◦ 경미한 오기 정정

- 동 조례안은 일괄개정 방식으로 용어 순화와 함께 단순한 제명, 조문변경 등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 및 안전성,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하겠음.

[참고자료1] 정비대상 조례와 조문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2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1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제3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4조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5조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6조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8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7조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8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시민소통기획관 → 홍보기획관
		제7조제5항	갈등관리협치과장 → 시민협력과장
제9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21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10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제9호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1조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1회에 한한다 → 한 차례만 한다
제12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4조의2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13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6조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26조제2항	조직담당관 → 창의행정담당관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4조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호에 한하여 → 제2호는
제15조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11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16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2조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17조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18조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5조제5항	차례에 한하여 → 차례에만
제19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	1차에 한하여 → 한차례만
제20조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때에 한하여 → 때만
제21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6조	한하여 → 한정하여
제22조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1차에 한하여 → 한차례만
제23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20조제1항	1차에 한하여 → 한차례만
제24조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4항	1차에 한하여 → 한차례만
제25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조의2제3항	1차에 한하여 → 한차례만
제26조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한하여 → 한정하여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관
제28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5조	한하여 → 한정하여
제29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한강사업본부장 → 미래한강본부장
		별표 2	교통정보과 → 미래첨단교통과
제30조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8조제3항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31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7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 행자 →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32조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9조제1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25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3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34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3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제4호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36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7조제3항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제25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37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38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27조제2항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39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5조제4항	차례에 한하여 → 차례만
		제6조제2항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제5조 → 제6조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11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 동물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동물정보시스템
		제15조제2항	제9조 → 제6조
		제25조제1항	제5조 → 제6조
		제25조제2항	제5조 → 제6조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40조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17호
제41조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23조제3항	1차례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42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43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44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6조제4항	차례에 한하여 → 차례만
제45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4조제3항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46조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47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48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49조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차례에 한하여 → 차례까지만
제50조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	의원회 → 위원회
제51조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52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사람에 한하여 → 사람에게만
		제7조제1항	자에 한하여 → 사람만이
		제12조의2제2항	허용하되, 1회에 한하여 → 허용하되, 연장 → 한 차례만 연장
제53조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3항	관리청에서는 → 관리청은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54조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55조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56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57조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10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58조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제5조제7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59조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60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제8호	한하여 → 한정하여
제61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62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63조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16조제1항	시행규칙 제52조의3 → 시행규칙 제73조의8
제64조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65조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2조제4호	한하여 → 한정하여
제66조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67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9조제7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68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69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5항	1차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70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	한하여 →한정하여
		제4조제1항제9호다목	방법에 한하여 → 방법으로만
		제5조제3호	방법에 한하여 → 방법으로만
		제8조제4항제1호	한하여 → 한정하여
		제9조제1항제4호	한하며 → 한정하며
		제9조의2제1항제1호	한하여 → 한정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판매시설에 한하여 → 판매시설만 가능하며
		제10조제1항제2호	한한다 →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한한다 →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한하여 → 한정하여
		제11조제1항제6호	한하여 → 한정하여
		제12조제2항제1호	현수막에 한하여 → 현수막만을
		제13조제3항제1호	안에 한하여 → 안에서만
		제16조제3호	내용에 한하여 → 내용에 한정하여
		제17조제3항제2호	한하여 → 한정하여
제71조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72조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6조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73조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74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5조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75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4항	자에 한하여 → 자에게만
제76조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77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8조제1항	자원순환과장 → 자원회수시설과장
제78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79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80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4항제1호	하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 치수안전과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제10조제1항	안전총괄과장 → 재난안전정책과장
			안전총괄과의 → 재난안전정책과의
제81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10조의2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82조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17조제3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83조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회에 한하여 → 두 차례까지만
제84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2제2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85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제1항	차레에 한하여 → 차례만
제86조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1차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87조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제3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88조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89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제9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90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91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8조제1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92조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93조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3조	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하여 → 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제94조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95조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	한하여 → 한정하여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96조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97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호	한한다 → 한정한다
제98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법 제27조제6항 → 법 제27조제9항
제99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 2	한강사업본부장 → 미래한강본부장
제100조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시정연구담당관 → 창의행정담당관
		제6조제6항	한하여 → 한정하여
제10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시정연구담당관 → 창의행정담당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 협의하여 일시 → 한 차례만
제102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경우에 한하여 → 경우에만
제103조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4항	자에 한하여 → 자에게만
제104조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사람에 한하여 → 사람에게만
제105조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06조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107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제5항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제108조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9조제4항	한하여 → 한정하여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5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우리시 조례 내 일본어 투 표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본어 투 표현 "한하여" 정비
- 나.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 다.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이관)에 따른 부서명 정비
- 라. 그 외 경미한 오기 정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법령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회사항: 협의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생략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김누리 (☎2133-6691)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본어 투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명이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관리청란 중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 시험의 처리기간을 연장”을 “시험의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민소통기획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갈등관리협치과장”을 “시민협력과장”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9호 중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

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1회에 한한다”를 “한 차례만 한다”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조직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한하여”를 “제2호는”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차례에 한하여”를 “차례만”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때에 한하여”를 “때에”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을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하며, 별표 2 중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교통정보과가”를 “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미래첨단교통과가,”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18조제3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4호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을 “경우 3

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차례에 한하여”를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을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동물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동물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5조”를 각각 “제6조”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1차례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차례에 한하여”를 “차례만”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차례에 한하여”를 “차례까지만”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의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사람에 한하여”를 “사람에게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자에 한하여”를 “사람만이”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허용하되, 1회에 한하여”를 “허용하되,”로, “연장”을 “한 차례만 연장”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관리청에서는”을 “관리청은”으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다목 중 “방법에 한하여”를 “방법으로만”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방법에 한하여”를 “방법으로만”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판매시설에 한하여”를 “판매시설만 가능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현수막에 한하여”를 “현수막만을”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안에 한하여”를 “안에서만”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내용에 한하여”를 “내용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자에 한하여”를 “자에게만”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과장”을 “자원회수시설과장”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하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을 “치수안전과장, 재난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정책과장”으로, “안전총괄과의”를 “재난안전정책과의”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까지만”으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차레에 한하여”를 “차레만”으로 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하여”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으로 한다.

제94조(「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5조(「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96조(「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7조(「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

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8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9항”으로 한다.

제99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선박의 기준및이용료의 비고란 제1호 중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제100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시정연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시정연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01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를 “협의하여”로, “일시”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2조(「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로 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자에 한하여”를 “자에게만”으로 한다.

제104조(「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람에 한하여”를 “사람에게만”으로 한다.

제105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6조(「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7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8조(「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가로수관리청(제3조제2호 관련)		가로수관리청(제3조제2호 관련)	
구분	관리청	구분	관리청
1.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 설치·관리와 특별시도 신설시의 가로수 설치	안전총괄실장	1.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 설치·관리와 특별시도 신설시의 가로수 설치	안전총괄실장
2.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 ~ 서울역 사거리)의 가로수 설치·관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2. 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 ~ 서울역 사거리)의 가로수 설치·관리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	구청장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	구청장
제3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① (생략)		제6조(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소장은 시험장비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 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서 <u>1회에 한</u>		② ----- ----- ----- ----- ----- <u>시험의 처</u>	

하여 시험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품질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 -----. ----- -----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검사협조) ① (생략) ② 시장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u>한하여</u>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검사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다.	제8조(검사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한정하여</u>----- ----- ----- -----.
제5조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1회에</u> <u>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 ----- <u>한 차례</u> <u>만</u> -----.
제6조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 닌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제8조(위원의 임기) ----- ----- -- <u>한 차례만</u> ----- --. ----- -----

간으로 한다.	-----.
제7조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생략)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u>한하여</u>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한정하</u> <u>여</u> -----.
제8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재정기획관, <u>시민소통기획관</u> 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홍보기획관</u>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갈등관리협치과장</u>으로 한다. ⑥ ~ ⑩ (생략)	----- <u>시</u> <u>민협력과장</u>-----.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⑤ (생략)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한 차례만</u>-----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한 차례만</u>----- -----.
제10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5조(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8. (생략) 9.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10. · 11. (생략) ③ ~ ⑥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 10. · 11.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층간소음 측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을 받은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층간소음 측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건에 대한 측정은 <u>1회에 한한다</u>. ② ~ ④ (생략)	제11조(층간소음 측정) ① ----- ----- ----- ----- -----. ----- <u>한 차례만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2에 해당하	제14조의2(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한 차례만</u> ----- ---.

는 경우 시장은 임기 만료 전에 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⑥ (생략)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6조(등록보상금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제2항에 따른 발명비용은 동일 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u>1회에 한</u> <u>하여</u> 지급한다.	제16조(등록보상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한 차례만</u> -----.
제26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u>조직담당관</u> 이 된다. ③ (생략)	제2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u>창의행정담당관</u>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주 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u>제2호에 한하여</u> 시장 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제7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 ----- ----- -----. ----- <u>제2호는</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략)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한 차례만</u> ----- -- . -----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공인의 종류) ① (생략)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체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u>경우에 한하여</u> 이를 가진다. 2. ~ 4. (생략)	제2조(공인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 <u>경우에만</u> ----- -----. 2. ~ 4. (현행과 같음)
제17조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제13조(위원의 임기) ----- ----- -- <u>한 차례만</u> ----- -- . ----- ----- -----

간으로 한다.	-----.
제18조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 ④ (생략)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u>차례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생략)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차례만</u> ----- -----.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차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한 차례만</u> ----- ---.
제20조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특별회계“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u>때에 한하여</u>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 6. (생략)	----- ----- ----- ----- -----<u>때에</u>----- ----- --. 4. ~ 6. (현행과 같음)
제21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u>한하여</u> 사용한다. 1. ~ 3.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 ----- <u>한정하여</u> ----- --.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차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⑤ (생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한 차례만</u> -----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임기) ① ----- ----- <u>한 차례만</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한 차례만</u>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지정조건 이행 심사·평 가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 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 터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4조의2(지정조건 이행 심사·평 가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 <u>한 차례만</u> ---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 할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u>한하여</u>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 <u>한정하여</u> ----.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운영조직) 제4조의 기능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전시관을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소속으로 둔다.		제5조(운영조직) ----- ----- 주 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	
제28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 4.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 ----- 한정하여 ----- --. 1. ~ 4. (현행과 같음)	
제29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1] <개정 2022. 12. 30.>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별표 1] <개정 2022. 12. 30.>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하천시설	<생략>	<생략>	한강사업본부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하천시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미래한강본부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2]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별표 2]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연 번	통합대상	주 관 부 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연 번	통합대상	주 관 부 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생 략〉				〈생 략〉			
※ ----- ----- ----- ----- <u>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 가</u> <u>로등은 구청이 CCTV는 교통정보</u> <u>과가</u> ----- ---				※ 상기의 통합대상별 통합지주의 최초 설치는 도로사업소가 하되, 최초설치 후 기타 부가시설에 대해서는 교통 운영과와 협의하여 해당 부가시설 관리자가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경우 <u>신호등과 지주는 도로사업소가,</u> <u>가로등은 구청이, CCTV는 미래</u> <u>첨단교통과가,</u> 기타 부가시설은 해 당 설치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제30조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용료 징수) ①·② (생 략) ③ 관공사를 도급 맡은 도급업 자가 관건설기계를 사용 신청하 였을 시에는 해당 공사 시행기 관의 장이 지급보증을 하는 <u>경</u> <u>우에 한하여</u> 사용료를 추징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징수)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 ----- <u>경</u> <u>우에만</u> ----- -----.

제31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 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제7조(대행자지정) -----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 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 -----.
제32조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1회에</u> <u>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구성 및 임기) ① ~ ④ (생략) ⑤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 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 <u>한 차례</u> <u>만</u>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구성 및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한 차례만</u> ----- ---. ----- ----- ----- ----- -----.
제3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를 <u>1회에 한하여</u> 지원할 수 있고,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지원 및 반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1. 2. (생략) ⑥ (생략)	-- <u>한 차례만</u>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u>한하여</u>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비용에 반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5조(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① ----- ----- <u>한정하여</u>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 ① ----- ----- ----- ----- -----

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 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 <u>한 차례만</u>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37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⑥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한 차례만</u>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38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영 제10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제6조의2(위원의 임기) ----- ----- ----- ----- <u>한 차례만</u> ----- -----. 제2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에 한하여</u>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1. 2. (생 략)	----- -----<u>경우에만</u> ----- -----. 1. 2. (현행과 같음)
제39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③ (생 략)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u>차례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⑭ (생 략)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생 략)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u>동물보호관리시스템</u>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차례만</u> ----- ----- ----- -----. ⑤ ~ ⑭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u>-----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두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6조-----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

----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

동물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

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
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
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
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및 분양
· 기증) ① (생 략)

② 시장은 분양·기증되는 동물
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적정하
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기
증을 받는 사람 및 영 제9조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교
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③ (생 략)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
호와 입양, 동물학대 방지, 동물
등록, 반려동물의 교육·홍보
등 동물보호·복지 시책이 원활
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또
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영 제5조에 따른 단체 등에 대

지 제12호서식-----

동물정보시스템-----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및 분양
· 기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6
조-----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

----- 제6조-----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 제5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 -----. ② ----- ----- ----- ----- ----- 제6조----- -----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녹색산업(GT)”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류, 농림수산, 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17호 ----- ----- ----- ----- ----- ----- -----.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제41조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23조(구성) ①·② (생 략)	제2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1차례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 --- <u>한 차례만</u> ----- ---. ----- ----- -----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2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①·② (생 략)	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③ ----- --- <u>한 차례만</u>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 ① ~ ③ (생 략)	제3조(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④ ----- -----

수 있고,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 3년간 세무조사와 2년간 <u>1회에 한하여</u>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 ----- --- <u>한 차례만</u> ----- -----.
제44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u>차례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차례만</u> -----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현행	개정안
제34조(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거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u>경우에 한하여</u> 허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⑤ (생략)	제34조(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경우에만</u> -----. 1.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6조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9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정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 -- <u>한 차례만</u> ----- -- . ----- ----- ----- ----- -----.
제47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제16조에 의해 구성된 주민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1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 ----- <u>한</u> <u>차례만</u>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 ----- ----- <u>한 차례만</u> -- ----- -----

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9조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배심원후보단) ①·② (생략) ③ 전문가배심원 및 시민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배심원후보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차 례까지만 -----.
제50조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u>위원회</u> 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 <u>위원회</u> - -----.
제51조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한 차례만</u>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52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점용허가) ①·② (생략) ③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	제3조(점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유의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
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을 3년
마다 조회하여 그 금액이 4억 5
천만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갱신을 허가한다. 다만, 자산가
액 4억 5천만원 초과자에 대하
여는 즉시 갱신제한을 하지 않
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④ ~ ⑥ (생략)

제7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시
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
설물 관리현황을 작성·보관하
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
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
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
하고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
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
영자증명서에 운영자와 운영자
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
의 사진을 첨부하여 등재하여야
하며,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 사람에게만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물 관리) ① -----

-----.

<u>자에 한하여</u> 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12조의2(시설물 철거의 특례) ① (생 략) ② 특례지원자에게 3년간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u>허용하되</u>, 1회에 <u>한하여</u> 위원회 또는 노숙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u>연장</u>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u>사람만이</u>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시설물 철거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허용하되</u>, ----- ----- ----- <u>한 차례만 연장</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전문가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u>관리청에서는</u>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u>경우에 한하여</u>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관리청은</u> ----- ----- ----- <u>경우에만</u> -----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생략)	제6조(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한 차례만</u> ----- -----.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정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 <u>한 차례만</u> ----- -----. ----- ----- ----- -----.
제56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한 차례만</u> -----

있다.	---
제57조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한 차례만</u>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한 차례만</u>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58조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① ~ ⑥ (생략)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u>한 차례만</u> ----- ----- ----- ----- ----- --. -----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한 차례만</u> ----- -----. ----- ----- -----.
제60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 1. ~ 7. (생 략) 8.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u>한하여</u> 산정한다. ③·④ (생 략)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u>한정하여</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7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 ④ (생략) ⑤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7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한 차례만</u> ----- -----. ----- ----- -----.
제62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25조(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생략) ③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제25조(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한 차례만</u> ----- -----. ----- ----- -----.
제63조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6조(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제16조(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① ----- -----

재산의 매각이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 <u>시행규칙 제73조의8</u>----- ----- -----.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생략)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임기종료시 고문의 잔여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한 차례만</u> ----- --. ----- ----- --.
제65조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u>한하여</u>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5.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한정하여</u> ----- ----- ----- --. 5. (현행과 같음)
제66조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 ----- <u>한 차례만</u> -----.
제67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현행	개정안
제29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① ~ ⑥ (생략) ⑦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u>한하여</u> 사용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29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u>한정하여</u> -----. ⑧ (현행과 같음)
제68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 한다.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u>한하여</u>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 ----- ----- -----. ----- ----- ----- <u>한정하여</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1차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한 차례만</u>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0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② (생략) 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설비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다.

가. ~ 다. (생략)

4.·5. (생략)

④·⑤ (생략)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나. (생략)

다.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

----- 한정하여 -----
-----.

가. ~ 다.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
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마. (생략)

② ~ ④ (생략)

제5조(업소표지의 표시방법)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
소·인증업소, 가격표시, 사업
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
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표시할 수 있다.

1.·2. (생략)

3.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조명
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
도록 덮개를 씌우고, 빛의 점
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
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
용할 수 있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
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
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

-----방법
으로만-----.

라.·마.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업소표지의 표시방법) ---

-----.

1.·2. (현행과 같음)

3. -----

----- 방법으로만
-----.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의 건물 옥상에 한하여 표시
할 수 있으며, 광원이 직접 노
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
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
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3. (생략)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
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
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
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
야 한다.

1. ~ 3. (생략)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
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
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광고에 한하며,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윗부
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
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

----- 한정하여 ----

-----.

2. 3. (현행과 같음)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
법)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한정하며 -----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략)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 6. (생략)

②·③ (생략)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
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
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
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
(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
----- 한정하여 -----
--.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1. -----

스포츠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
광고에 한정한다.)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
관대, 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
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
횡단보도 쉼터, 가로영상문화
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
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
한다)

3. 4. (생략)

5.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제3
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
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
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
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
시방법·장소·기간 및 광원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
준을 정해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
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

-- 판매시설만 가능하며, ---

2. -----

----- 한
정한다--

3. 4. (현행과 같음)

5. -----

----- 한정한다
-----.

-----.

6. -----

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
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
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
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
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
다.

② ~ ⑤ (생략)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 관리기준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
야 한다.

1.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소 등의 현수막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업
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
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 다

-- 한정하여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 한정하여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 관리기준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현수막만을

-----.

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과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 6. (생략)

③ (생략)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 ② (생략)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면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영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생략)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국가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

-----.

2.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안에
서만 -----.

2. (현행과 같음)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

-----.

1. · 2. (현행과 같음)

3. -----

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구체적 손해 발생이 명백하게 입증된 <u>경우에 한하여</u>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생 략)	----- ----- ----- ----. ----- ----- ----- <u>경우에만</u> ----- -----.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제6조(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한 차례만</u>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3조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	제6조(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 <u>한 차례만</u> ----- ----- ----- -----

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③ (생략)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5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5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한 차례만</u> -----.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 ③ (생략)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u>자에 한하여</u>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자에게만</u> ----- --.
제76조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3조(면허기간 연장) ① 제11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u>경우에 한하여</u>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면허기간 연장) ① ----- ----- ----- ----- <u>경우에만</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u>자원순환과</u>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8조(협의회 구성) ① ----- ----- ----- --- <u>자원회수시설과장</u>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8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공청회)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u>한하여</u>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한</u> <u>정하여</u> ----- ----- ----- ----- ----- -----.
제79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임원) ① ~ ③ (생략)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	제9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⑤·⑥ (생략)	-- <u>한 차례만</u>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80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u>하천관리과장</u>, <u>안전총괄과장</u> 2. 3. (생략) ⑤·⑥ (생략)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호계정은 복지정책과장, 재난계정은 <u>안전총괄과장</u>을 각각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각 계정별로 두되 서기는 각각 복지정책과 및 <u>안전총괄과</u>의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생략)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 <u>치수안전과장</u>, <u>재난안전정책과장</u> 2.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등) ① ----- ----- ----- <u>재난안전정책과장</u>----- ----- ----- <u>재난안전정책과</u>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3조(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① (생략)	제13조(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진흥지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당 진흥지구내 권장업종예정시설을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다만, 복합용도건축물의 경우에는 권장업종예정시설의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u>한하여</u>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② ----- ----- ----- ----- ----- ----- ----- ----- ----- ----- ----- <u>한정하여</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산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제20조의2(산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	③ ----- ----- <u>한 차례만</u> ----- -----.

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 ⑨ (생 략)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82조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7조 (처리기간)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u>1회에 한하여</u>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처리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한 차례만</u> ----- -----.
제83조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 략)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2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두 차례까지만</u>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4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① (생 략) ② 주차장 외 용도의 시설 또는	제10조의2(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대시설의 경우 시가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초의 사용허가에 <u>한하여</u> 종전의 사용자(문서상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는 각 점포(사무실 등 포함)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인(법인 포함)이 사용허가 받을 수 있는 점포는 1개소로 한정한다. ③ (생략)	----- ----- ----- ---- <u>한정하여</u>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u>차례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 ----- -- <u>차례만</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6조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협의회 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1차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	제9조(협의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한 차례만</u> -----

다.	--.
제87조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 ④ (생략)	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⑤ ----- --- <u>한 차례만</u> ----- ---.
제88조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구성) ① ~ ③ (생략)	제8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 <u>한 차례만</u> ----- -----. ----- ----- -----.
제89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⑥ (생략)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	⑦ ----- <u>한 차례만</u> ----- ----- -----. -----

는 기간으로 한다. ⑧ ~ ⑫ (생 략)	-----.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90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한 차례만</u> ----- -----.
제91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임기) ①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임기) ① ----- ----- ----- <u>한 차례만</u> -----.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3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제13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한 차례만</u> ----- ----- -----. ⑤ (현행과 같음)
제93조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택시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u>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하여</u>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 ----- <u>택시운송사업자에게</u> <u>만</u> -----.
제94조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 <u>한 차례만</u> -----.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u>한하여</u>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생략)	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한정하여</u> ----- ----. ③ (현행과 같음)
제96조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1회에</u> <u>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 <u>한 차례</u> <u>만</u> -----.
제97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자본예산에 속하는 것에 <u>한한다</u>) 2. 3. (생략)		제6조(용도) ----- -----. 1. ----- ----- -- <u>한정한다</u> -- 2. 3. (현행과 같음)			
제98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2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u>법 제27조제6항</u>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2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u>법 제27조제9항</u> ----- -----. 1. ~ 3. (현행과 같음)			
제99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2] <개정 2023. 5. 2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3. 5. 2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선박	구분	기준 및 이용료		비고	
	한강 르네상스 호	<생략>	<생략>		1. 운항노선은 서울특별시 <u>한강사업본부</u> 가 정한다. 2. 2시간 초과 승선시에는 매 추가시간마다 1시간 승선료의 50~90%를 추가한다.
		<생략>	<생략>		
	<생략>				
선박	구분	기준 및 이용료		비고	
	한강 르네상스 호	<생략>	<생략>		1. 운항노선은 서울특별시 <u>미래한강본부</u> 가 정한다. 2. 2시간 초과 승선시에는 매 추가시간마다 1시간 승선료의 50~90%를 추가한다.
		<생략>	<생략>		
	<생략>				

제100조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 : <u>시정연구담당관</u> ,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2. (생략) 3. 특별위원 : 심의 안건의 전문가가 외부위원 가운데 없을 경우 해당 안건에 <u>한하여</u> 특별히 위촉하는 전문가	제3조(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u>창의행정담당관</u> ----- ----- ----- 2. (현행과 같음) 3. ----- ----- ----- <u>한정하여</u> ----- -----
제6조(회의) ① ~ ⑤ (생략) ⑥ 심의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u>시정연구담당관</u>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	제6조(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창의행정담당관</u> -----

사무관이, 서기는 학술용역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 -----.
제10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u>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u>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u>일시</u>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협의하여</u> ----- ----- <u>한 차례만</u> -----.
제102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u>경우에 한하여</u> 지급한다. ② (생략)	제3조(지원대상) ① ----- ----- ----- ----- ----- -----. ----- ----- <u>경우에만</u> -----.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 ③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 ③

(생략)	(현행과 같음)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u>자에 한하여</u>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 ----- ----- <u>자에게만</u> ----- --.
제104조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u>사람에 한하여</u>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 ----- <u>사람에게만</u> ----- -----.
제105조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 ----- -----.
제106조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 -----

며,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 <u>한 차례만</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7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현행	개정안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 ④ (생략)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한 차례만</u> ----- ---. ----- ----- ----- ----- ----- -----. ⑥ (현행과 같음)
제108조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u>한하여</u> 10만원(부가세 미포함)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한다. 1. 2. (생략)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한정하여</u> ----- ----- -----. 1.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내 일본어 투 용어의 순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김누리 주무관(2133-6691)